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7

발의연월일 : 2024. 7. 12.

발 의 자:김현정·강준현·김동아

김승원 · 김한규 · 문진석

민병덕•박범계•박선원

오세희 • 이광희 • 이재관

이훈기 · 정성호 · 정준호

정진욱 · 최민희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까지의 죄,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 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제12조의2의 범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	제2조(정의) ①
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5
등)부터 <u>제15조(미수범)까지</u>	<u>제12</u> 조(성적 목적을
의 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u>까지의 죄, 제12조의2(성적</u>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란행위)부터 제15조(미수범)
	<u>까지의 죄</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주
	거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 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 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 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 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 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부터 제12조

② ~ ④ (생 략)